

「2024 생명보험이란 무엇인가」 교재 정오표

(생명보험협회 / 2024년 1월)

※ 페이지는 개정된 교재를 기준으로 함

구분	페이지	변 경 전	변 경 후	비고
3장	124	<p>(4)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모집종사자의 역할</p> <p>보험설계사 등 모집종사자는 업무특성상 보험계약자 등을 가장 먼저 대면하고 보험계약자의 재산상황, 건강상태 등을 가장 먼저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다. 따라서 모집종사자는 보험계약 모집이나 보험금 지급 신청시 <u>보험계약</u> 및 수익자의 보험사기 유발가능성을 파악하고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가 모방범죄 등으로 보험사기자가 되지 않도록 보험사기방지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p>	<p>(4)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모집종사자의 역할</p> <p>보험설계사 등 모집종사자는 업무특성상 보험계약자 등을 가장 먼저 대면하고 보험계약자의 재산상황, 건강상태 등을 가장 먼저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다. 따라서 모집종사자는 보험계약 모집이나 보험금 지급 신청시 <u>보험계약자</u> 및 수익자의 보험사기 유발가능성을 파악하고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가 모방범죄 등으로 보험사기자가 되지 않도록 보험사기방지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p>	오기 수정
4장	165	<p>(10) 중복계약 체결 확인의무 (「보험업법」 제95조의5)</p> <p>보험회사 또는 보험설계사 등은 실손의료보험(실제 부담한 의료비만 지급하는 제3보험상품)계약을 모집하기 전에 보험계약자가 되려는 자의 동의를 얻어 피보험자가 되려는 자가 이미 다른 실손의료보험계약의 피보험자로 되어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한 내용을 보험계약자가 되려는 자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p> <p>또한 확인결과 피보험자가 되려는 자가 다른 실손의료보험계약의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 비례분담 등 보험료 지급에 관한 세부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p>	<p>(10) 중복계약 체결 확인의무 (「보험업법」 제95조의5)</p> <p>보험회사 또는 보험설계사 등은 실손의료보험(실제 부담한 의료비만 지급하는 제3보험상품)계약을 모집하기 전에 보험계약자가 되려는 자의 동의를 얻어 피보험자가 되려는 자가 이미 다른 실손의료보험계약의 피보험자로 되어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한 내용을 보험계약자가 되려는 자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p> <p>또한 확인결과 피보험자가 되려는 자가 다른 실손의료보험계약의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 비례분담 등 <u>보험금</u> 지급에 관한 세부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p>	오기 수정
	169	(신 규)	<p>∴ 통신수단 중 화상통화를 이용한 모집 관련 준수사항 (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 규정 제22조제7호 등)</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화상통화를 이용한 보험모집 허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업법 시행령 등 법령개정에 따라 통신수단 중 화상통화(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를 이용한 보험모집이 허용되었다. 모집종사자는 화상통화를 통해 보험을 모집하는 경우에도 전화 및 사이버몰을 이용한 모집과 마찬가지로 보험계약자와 대면하지 않고 설명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div>	제정 내용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협회는 화상장치를 이용한 보험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회사와 모집종사자가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에 관한 모범규준을 마련할 수 있으며, 현재 생명보험협회는 「화상통화 보험모집 업무 프로세스 모범규준」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2023.8.1. 제정) <p>화상통화를 이용한 모집 관련 준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집종사자는 보험회사가 구축한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자와 공유하는 화면을 통해 설명내용을 동시에 보면서 진행하여야 한다. • 보험회사 및 모집종사자는 상품 설명 내용 등을 음성녹음이나 전자문서 등의 형태로 확보·유지하여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화상장치 이용시기, 보험계약자의 정보 및 본인확인 여부, 보험회사 정보, 설명 상품, 중요사항 설명 여부 등의 정보가 포함된 로그정보 - 인터넷 화상장치를 통해 보험 상품의 내용, 보험료, 보험금 및 위험보장 범위 등을 설명한 내용 - 보험계약의 청약이 있는 경우 청약 내용, 보험료의 납입, 보험기간, 고지 의무, 약관의 주요 내용 등 보험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 또는 설명한 자료 및 그에 대해 보험계약자가 답변하고 확인한 내용 • 보험회사는 매분기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체결한 보험계약의 100분의 20 이상에 대하여 설명자료 및 증거자료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6장	216	<p>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 합산하여 종합과세 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적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 <u>1,200만원</u> 이하인 경우에는 3~5%의 저율 분리과세를, 연 <u>1,200만원</u> 초과인 경우에는 15%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p> <table border="1" data-bbox="319 1926 829 2139"> <thead> <tr> <th>구 분</th> <th>연금보험</th> <th>연금저축</th> </tr> </thead> <tbody> <tr> <td>보험금 수령시 세제 혜택</td> <td>보험차익 비과세 (이자소득세 비과세)</td> <td>연금소득 분리과세 선택 • 사적연금소득 합계액 연 <u>1,200만원</u> 이하시 : 3~5% 세율 적용</td> </tr> </tbody> </table>	구 분	연금보험	연금저축	보험금 수령시 세제 혜택	보험차익 비과세 (이자소득세 비과세)	연금소득 분리과세 선택 • 사적연금소득 합계액 연 <u>1,200만원</u> 이하시 : 3~5% 세율 적용	<p>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 합산하여 종합과세 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적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 <u>1,500만원</u> 이하인 경우에는 3~5%의 저율 분리과세를, 연 <u>1,500만원</u> 초과인 경우에는 15%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p> <table border="1" data-bbox="861 1926 1372 2139"> <thead> <tr> <th>구 분</th> <th>연금보험</th> <th>연금저축</th> </tr> </thead> <tbody> <tr> <td>보험금 수령시 세제 혜택</td> <td>보험차익 비과세 (이자소득세 비과세)</td> <td>연금소득 분리과세 선택 • 사적연금소득 합계액 연 <u>1,500만원</u> 이하시 : 3~5% 세율 적용</td> </tr> </tbody> </table>	구 분	연금보험	연금저축	보험금 수령시 세제 혜택	보험차익 비과세 (이자소득세 비과세)	연금소득 분리과세 선택 • 사적연금소득 합계액 연 <u>1,500만원</u> 이하시 : 3~5% 세율 적용	개정 내용 반영
구 분	연금보험	연금저축														
보험금 수령시 세제 혜택	보험차익 비과세 (이자소득세 비과세)	연금소득 분리과세 선택 • 사적연금소득 합계액 연 <u>1,200만원</u> 이하시 : 3~5% 세율 적용														
구 분	연금보험	연금저축														
보험금 수령시 세제 혜택	보험차익 비과세 (이자소득세 비과세)	연금소득 분리과세 선택 • 사적연금소득 합계액 연 <u>1,500만원</u> 이하시 : 3~5% 세율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적연금소득 합계액 <u>연 1,200만원</u> 초과시 : 15% 세율 적용 * 지방소득세 별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적연금소득 합계액 <u>연 1,500만원</u> 초과시 : 15% 세율 적용 * 지방소득세 별도 																
	219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 개인형 퇴직연금(IRP)</th> <th>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th> </tr> </thead> <tbody> <tr> <td>회사 납입분</td> <td>전액 손금(비용)으로 인정</td> <td>일정한도 내에서 손금(비용)으로 인정</td> </tr> <tr> <td>근로자 추가납입분</td> <td>소득금액 및 연령에 따라 세액공제 납입한도, 세액공제율에 차이가 있음*</td> <td></td> </tr> </tbody> </table> <p>*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및 세액공제율' 참고</p>	구 분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 개인형 퇴직연금(IRP)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	회사 납입분	전액 손금(비용)으로 인정	일정한도 내에서 손금(비용)으로 인정	근로자 추가납입분	소득금액 및 연령에 따라 세액공제 납입한도, 세액공제율에 차이가 있음*		219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 개인형 퇴직연금(IRP)</th> <th>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th> </tr> </thead> <tbody> <tr> <td>회사 납입분</td> <td>전액 손금(비용)으로 인정</td> <td>일정한도 내에서 손금(비용)으로 인정</td> </tr> <tr> <td>근로자 추가납입분</td> <td><u>종합소득금액, 총 급여액에 따라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한도 및 세액공제율에 차이가 있음*</u></td> <td></td> </tr> </tbody> </table> <p>*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및 세액공제율' 참고</p>	구 분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 개인형 퇴직연금(IRP)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	회사 납입분	전액 손금(비용)으로 인정	일정한도 내에서 손금(비용)으로 인정	근로자 추가납입분	<u>종합소득금액, 총 급여액에 따라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한도 및 세액공제율에 차이가 있음*</u>		개정 사항 반영
구 분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 개인형 퇴직연금(IRP)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																					
회사 납입분	전액 손금(비용)으로 인정	일정한도 내에서 손금(비용)으로 인정																					
근로자 추가납입분	소득금액 및 연령에 따라 세액공제 납입한도, 세액공제율에 차이가 있음*																						
구 분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 개인형 퇴직연금(IRP)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																					
회사 납입분	전액 손금(비용)으로 인정	일정한도 내에서 손금(비용)으로 인정																					
근로자 추가납입분	<u>종합소득금액, 총 급여액에 따라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한도 및 세액공제율에 차이가 있음*</u>																						
6장	231	<p>라. 연금소득 분리과세 선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적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 <u>1,200만원</u> 이하인 경우 : 3~5% 저율 분리과세 선택 가능 사적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 <u>1,200만원</u>을 초과하는 경우 : 15% 분리과세 선택 가능 <p>(1) 사적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 <u>1,200만원</u> 이하인 경우</p> <p>사적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 <u>1,200만원</u> 이하인 경우 3~5%의 저율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으며, 연금으로 수령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인출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p>	231	<p>라. 연금소득 분리과세 선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적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 <u>1,500만원</u> 이하인 경우 : 3~5% 저율 분리과세 선택 가능 사적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 <u>1,500만원</u>을 초과하는 경우 : 15% 분리과세 선택 가능 <p>(1) 사적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 <u>1,500만원</u> 이하인 경우</p> <p>사적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 <u>1,500만원</u> 이하인 경우 3~5%의 저율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으며, 연금으로 수령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인출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p>																			
	233	<p>(2) 사적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 <u>1,200만원</u>을 초과하는 경우</p> <p>2022년 세제 개편을 통해 사적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 <u>1,200만원</u>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15%)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p> <p>이러한 세제 혜택은 국민들의 노후 소득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23.1.1이후 연금을 수령하는 분부터 적용된다.</p>	233	<p>(2) 사적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 <u>1,500만원</u>을 초과하는 경우</p> <p><u>사적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15%)를 선택할 수 있다.</u></p> <p>이러한 세제 혜택은 국민들의 노후 소득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u>'22년 세법 개정시(최초 도입시) 분리과세 기준 금액은 1,200만원이었으나, '23년 세법 개정시 분리과세 기준금액을 1,500만원으로 상향함으로써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소득 마련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게 되었다.</u></p>	개정 사항 반영																		

개정 전	개정 후	구분	개정 전	'22년 개정	'23년 개정
종합과세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15%) 선택가능	<u>과세 방법</u>	종합과세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15%) 선택가능	-
<p>한편,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과 운용수익을 의료목적,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에는 앞의 (1) 사적연금소득 합계액이 연 1,200만원 이하인 경우와 동일한 원천징수세율(3~5%)을 적용하여 무조건 분리과세한다.</p>		<u>분리과세 기준</u>	-	연 1,200만원 이하	연 1,500만원 이하
		<u>적용 시기</u>	-	'23.1.10후 연금 수령분 부터	'24.1.10후 연금 수령분 부터
		<p>한편,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과 운용수익을 의료목적,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에는 앞의 (1) 사적연금소득 합계액이 연 1,500만원 이하인 경우와 동일한 원천징수세율(3~5%)을 적용하여 무조건 분리과세한다.</p>			
개정 사항 반영					